#### 영주시 공고 제2023 - 67호

「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월 13일

영 주 시 행하

##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○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## 2. 주요내용

-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
  - 8급 이하 시험 응시(가능) 연령과 동일하게 '18세 이상' 이상으로 하향 조정
- 응시요건(자격증) 정비
  -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, 기타직렬 응시요건(자격증) 미비사항 정비 등)

#### 3. 개정규칙안 : 붙임 1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## 5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: 총무과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-mail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, 연락처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※ 보내실 곳

- 우 편 :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)

영주시장(참조 : 총무과) 우편번호 36132

- F A X : 054-639-6259 송신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

- 전 화: 054-639-6275

- E-mail: parkkn12@korea.kr

#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	
검토사항			
주요내용	<ul> <li>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</li> <li>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</li> </ul>		
	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		
의 견	샼또잔	연 락 처	
제출자	성 명	(서명 또는 날인)	

<붙임 1>

영주시 규칙 제 호

##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호 중 "20세"를 "18세"로 한다.

별표 4, 별표5의2, 별표7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, 별표4(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, 별표 5의2,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응시연령) 공무원 신규임용시	제9조(응시연령)
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	
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	
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.	
1. 7급 이상 : <u>20세</u> 이상	1 <u>18세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